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9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차지호·서영교·임오경

신정훈 · 김동아 · 권칠승

임호선 · 정성호 · 김재원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 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

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및 제19조제2항·제3항 신설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살예방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환경
	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살예방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
	<u>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	
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	
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u>5년</u> 마다 자살실태조사	<u>3년</u>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u>「정보통신</u>	구축) ① <u>「정보통신</u>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u>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u>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 · 해양경찰관서 및 소 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차단 되거나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 를 게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3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② ~ ⑨ (생 략)